

# 『문화교차연구』 원고 투고 규정

2024 9월 1일 제정

**제1조 (명칭)** 이 규정은 ‘『문화교차연구』 원고 투고 규정’이라 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문화교차연구소 발행 학술지 『문화교차연구』에 게재할 원고의 투고에 대한 업무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 (원고의 성격)

1.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2. 학위 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.
3. 투고 원고가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『문화교차연구』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

**제4조 (원고 범위)** 문화교차연구소의 학술지 『문화교차연구』에 게재하는 원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단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할 수 있다.

1. 감정과학에 관한 논문
2. 사회심리학에 관한 논문
3. 예술학에 관한 논문
4. 한류문화학에 관한 논문
5. 동서양 고전과 관련된 논문
6. 새로운 자료 소개나 번역

**제5조 (저작권)** 『문화교차연구』에 게재된 원고 등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. 저작권에는 디지털화된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. 다만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사용할 경우 본 연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.

**제6조 (투고 자격)** 원고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수료자가 투고를 원할 경우 투고 자격을 허용할 수 있다.

**제7조 (투고 시한 및 발행시기)** 『문화교차연구』는 6월말과 12월말 연2회 발행하는 것을 원

칙으로 한다. 이에 따라 투고 기한은 각각 4월말과 10월말로 한다. 단,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투고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8조 (원고 분량)** 원고의 분량은 용지크기 A5(152×225) 글자크기 11포인트로 20페이지 내외로 한다. 단 투고된 원고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.

**제9조 (심사료 및 게재료)** 『문화교차연구』에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도록 한다.

1. 심사료 10만원
2. 게재료 20만원
3. 재심의 경우 재심사료 10만원 추가
4. 원고가 20페이지 넘을 경우 페이지당 1만원씩 추가

**제10조 (투고 논문 심사 결과)**

1.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- 1) 게재
  - 2) 반려
2. 게재에 필요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된 원고를 다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게재와 반려를 결정한다.

**제10조 (원고 작성 방법)** 원고 작성 방법은 별도의 ‘원고 작성 규칙’에 따른다.

**제11조 (부칙)**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